

KLSI

ISSUE PAPER

제178호
2022-17호
(2022.10.20.)

www.ksli.org

중국 동포 노동실태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윤자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 I. 들어가며
- II. 「재외동포법」과 「방문취업제」 제도 형성 경로 및 현황
- III. 중국 동포 노동실태와 현황 - ‘이민자고용조사’ 분석 결과
- IV. 요약과 함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07 (백련빌딩) 701호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

〈요 약〉

-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 체류 자격자 중 다수를 차지함. 강력한 노동이주 유인, 재외동포 제정 당시 재외동포 범위가 담지하고 있던 차별과 시정, 친인척 방문경로 형성 등 여러 요인이 뒤섞인 결과, 중국 동포 체류자격의 제도적 분화로 이어졌음.
 - 현 시점, 재외동포 자격자는 자유로운 출입국과 정주가 허용되지만, 단순노무 분야 취업은 금지됨. 방문취업 자격자는 단순노무 분야에 한정해 취업이 허용되고,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취업 절차를 밟게 되며 체류 기간의 상한이 있음. 즉, 제도적으로 중국 동포의 체류자격에 있어 단순노무 인력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이주 분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재외동포 취득 경로 중 다수가 방문취업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이며, 산업 현장에서도 단순노무직-비(非) 단순노무직 구분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원고에서는 통계청 ‘이민자 고용조사(2021)’와 부가조사 분석을 통해 방문취업과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중국 동포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분석했음. 그 주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첫째,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연령대는 50~59세(29.8%)와 60세 이상(28.4%)이 절반 이상임. 기혼 비율은 66.1%이고 비혼·미혼 비율은 33.9%이나, 내국인보다 이혼(31.2%)과 사별(27.2%) 비율이 높음. 특히 여성은 사별 비율(방문취업 30.1%, 재외동포 51.5%, 전체 48.5%)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둘째,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봤을 때 남성 취업자 비율은 75.5%이고, 여성 취업자 비율은 54.3%임. 다만 성별·연령별 취업자 분포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30~49세까지 남성보다 취업자 비율이 낮으나 50~59세(남성 32.8%, 여성 36.8%)와 60세 이상(남성 15.6%, 여성 20.6%)은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중국 동포 여성은 중고령에 접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 셋째, 방문취업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서(51.2%)가 절반 수준임. 하지만 동시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여기거나(11.3%) 현재 하는 업무를 할 수 없어서(10.9%) 등 상대적으로 오랜 체류 기간이 보장되고 취업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약 22.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넷째, 재외동포 한국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방문취업일 때와 현재 모두 취업함(85.5%)이 대부분임. 재외동포 대상으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일 때와 하는 일의 속성과 임금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76.6%)”, “방문취업일 때와 임금 또는 보수가 동일한 경우(73%)”가 다수임. 따라서 방문취업-재외동포의 노동은 연속성을 띤.
- 다섯째, 한국 취업 시 출입국관리소 또는 고용센터 신고 여부는 “신고”가 59.4%이고, “미신고”가 40.6%임. 또한, 현재 직장(혹은 최근 직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50.2%에 불과함.
 - 취업이나 근무처 변경 시 미신고 이유는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46.9%)” > “일용직이라서(21.2%)” > “신고 방법을 몰라서(12.3%)” 등 순임. 방문취업과 달리 재외동포는 별도의 취업 절차가 없다는 점, 그리고 취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와 신고 방법을 몰라서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동 현장에서 취업 신고 등의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직경로는 “한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28.7%)”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20%)”, 혹은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지인(15.4%) 등 개인적인 인맥 비율(64.1%)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하이코리아 등 한국 정부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경유해 구직하는 경우(2.5%)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주-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직경로 형성이 필요함.
- 일곱째, 중국 동포 중 32.2%가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30.8%)보다 여성(36.6%)이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 다수 종사 산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장시간 노동 비율이 49.6%로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월 소득구간을 살펴보면 남성(34.6%)은 여성(4.6%)에 비해 300만원 이상 비율이 30%p 높고, 여성(32.2%)은 남성(12.5%)에 비해 100만원~200만원 미만 비율이 높음. 이러한 차이는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광제조업, 건설업)과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여덟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97%) > 산재보험(58.4%) > 고용보험(51.1%) > 국민연금(47.2%) 순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당연가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재보험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음. 특히 농림어업(산재보험 미가

입 65.6%)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장벽이 높은 점 등 제도적 한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 기존에 있는 사회보험 지원제도와의 연결 역시 필요함.

- 아홉째, 중국 동포 실업자 중 약 40%가 지난 1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취업자 역시 지난 1년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경우(8.9%)가 있음. 중국 동포 실업자 모두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국 동포 노동실태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윤자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I. 들어가며

- 92년 한·중 수교 이후 국내 중국 동포의 수가 증가했음. 1993년 시점 재한 중국 동포의 수는 2만 3,727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70만 7,098명으로 2,880% 증가함(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어들며 재한 중국 동포 수 역시 64만 7,576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체류 외국인 중 1/3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재한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부정적임. 그 주된 원인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과장되고 왜곡된 이미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진단이라고 볼 수 있음.
 - 국내 미디어가 중국 동포에 대한 ‘관점’을 형성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김종수, 2016)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살인자·보이스피싱·인육괴담 등 조직적인 범죄자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우충완·우형진, 2014; 박미화·김솔, 2017에서 재인용).
 - 이와 조응해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보이는 조선족 혐오 담론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박미화·김솔, 2017; 국가인권위원회, 2020). 박미화·김솔(2017)은 오원춘 사건 보도 이전과 이후 기사 댓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조선족 간주 유형이 △일자리 위협자 △대세이의 편승자 △잠재적 범죄자¹⁾ △질서 미성숙자 △공생 대상자 △사회적 약자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드러냈음.

1)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외국인 가해자 비율은 2.2% 수준에 이르며, 만인범죄율 역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절반 수준인 것이 현실임. 덧붙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재한 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 국적자의 범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박준휘 외, 2018).

- 이러한 재현과 인식이 과연 어느 정도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 것임. 다만 한국 사회가 중국 동포를 둘러싼 일부 사실을 보편적 현실 일반으로 치환하며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조선족’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자명해 보임.
 - 한국리서치(2020)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경우 혐오 표현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가 어떤 논리로든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조선족 혐오 담론 저변에 어떤 구조와 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함.
- 중국 동포 실태와 미디어에서의 재현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 특히 오정은 외(2017) 연구에서는 중국 동포 지역별·체류자격별 체류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한국행 배경, 그리고 생활 및 노동실태 등을 드러낸 바 있음.
 - 중국 동포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조금씩 특성을 달리함.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이루어진 연구(이진영 외, 2008; 김현미, 2009; 광재석·설동훈, 2010; 정기선 외, 2010)가 있으며, △방문취업자 뿐 아니라 영주·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서리·이창원, 2014) △포괄적 이주노동자 실태에서 한 부분으로 다루거나(광윤경 외, 2020; 오경석 외, 2020) △중국 동포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연구(최윤경 외, 2014; 손인서, 2020; 김유희 외, 2021) 등임.
-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중국 동포의 노동실태에 대한 개괄적·기초적인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이를 위해 먼저 중국 동포의 주된 체류자격과 관련된 「재외동포법」과 「방문취업제」 제도 형성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이하 이민자고용조사)」 및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부가조사」 2021년도 원자료를 분석했음.

II. 「재외동포법」과 「방문취업제」 제도 형성 경로 및 현황

1. 「재외동포법」 제정과 ‘인력 수급’ 통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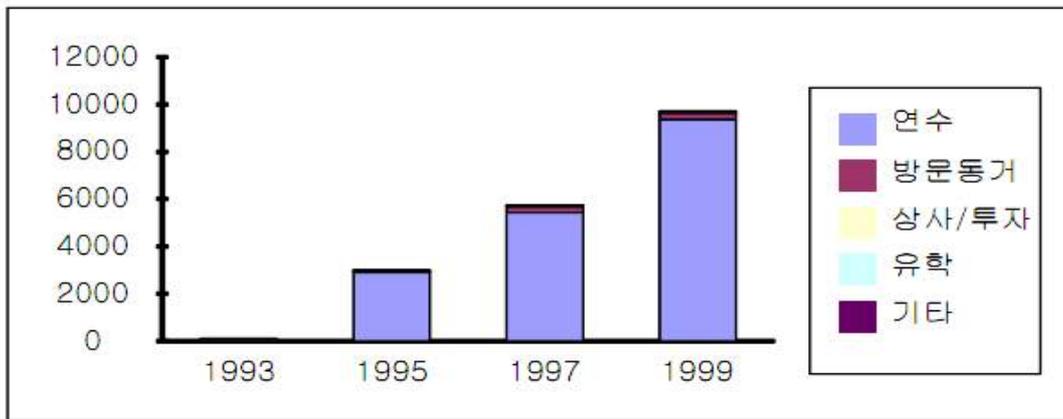
가. 「재외동포법」 제정 배경

- 재외동포법 제정의 배경에는 우선 1990년대 냉전체제 붕괴로 인한 구공산권 국가와의 교류가 자리함(광재석, 2019; 안지연·양보균, 2021). 80년대 중국의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의 잉여노동력이 발생했고, 이미 친척 방문으로 한국 방문에 친화성이 있던 조선족은 한국을 이주 목적지로 여기게 되었음(안지연·양보균, 2021).
 - 한국에서 발생한 ‘3저 호황’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됨. 1980

년대 재미교포들의 재산권 행사와 IMF 이후 불어 닥친 ‘세계화’ 열풍 역시 재외동포법 제정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힘(곽재석, 2019).

- 중국에서의 노동력 유입의 계기는 증대하였으나, 한국의 ‘해외 인력 유입’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음. 이에 조선족은 연수, (위장)혼인, 밀입국 등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는 한중수교 이전부터 뚜렷한 사회 문제로 현시되었음(이혜경 외, 2006).
- 남성은 건설업, 여성은 도소매 서비스업과 비공식 돌봄노동에 종사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가 두드러졌으나 중국-한국 간 임금 차이(약 20배)는 조선족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과 노동력 착취를 감수하며 한국에 남아 있도록 한 동인이 되었음(안지연·양보균, 2021).
- 이러한 환경의 형성은 재외동포법 대상에서 제정 과정에서 재산권을 행사했던 재미교포와 달리 재중동포는 ‘동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조선족 동포 거주 등록자의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유형 (1993~1999)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처: 김판준(2014), p. 119.

나. 재외동포법 제정 주요 과정

(1) 재외동포법 초안과 재중동포의 투쟁

- 법무부에서 마련한 「재외동포법」 초안은 입법 과정에서 재외동포 업무 소관을 맡고 있던 외교부와 마찰을 빚었음(곽재석, 2019). 주로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재외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었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는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재외동포법 (1999년 9월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

- 조선족이 ‘동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90년대 종교단체의 노동운동과 연결되어 있음(박우, 2011).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들이 성남 신도시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성남지역 ‘노동자의 집’ 등의 노동운동과 조우했기 때문임.
- 당시 조선족 사회에서는 가짜 비자 사기 피해 문제가 화두였으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조선족 사기 피해 실태를 고발하며 중국 동포에 대한 무관심을 반성하고 동포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했음(박우, 2011; 247).
- 김해성 목사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그리고 조선족 3명(문현순 씨 등)은 99년 재외동포법 국회 통과 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음(박우, 2011; 설동훈 2002). 이에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설동훈, 2002).
- 당시 헌법재판소는 “동포를 법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취하는 외국 예를 찾을 수 없고, 인도적 견지에서조차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당시 종교단체 중심 노동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운동의 주창과 그 맥이 닿아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음.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하며 적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수립 이전과 이후 동포를 차별하면서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출입국기회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 기회를 차단당하였다.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정책을 취하는 외국의 예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에서의 차별은 민족적 입장을 차치하고라도 인도적 견지에서조차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입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1.11.29, 99헌마494

(2) 국적 회복 운동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강제 추방의 위기에 몰린 조선족들은 한국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국적 회복 운동을 벌이나 이들의 국적 회복 신청은 법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되던 2004년 시민사회와 이주노동자단체의 일관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미등록체류자를 추방한 것에서도 확인됨(케빈 그레이, 2005). 단순노무 인력의 정주화 방지라는 고용허가제의 원칙이 재한 조선족에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재외동포법 헌법소원 운동으로 인해 재외동포법 규정 자체의 차별적 요인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불법체류 다발국가(중국 등)”에 거

주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적 법적용을 지속했음. 이에 대응해 중국 동포사회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나, 결과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시 1년 동안 한국 체류 허용 등 일시적 ‘유화정책’에 그치고 말았음 (곽재석, 2019).

2. 「방문취업제」 - 유화적인 이민정책과 이주의 분화

가. 「방문취업제」를 둘러싼 배경

(1) 지방자치단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 ‘친인척 방문’의 경로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특히 재중동포 여성과의 결혼이 장려됐음(원숙연, 2008). 농촌 지역 지자체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펼쳤음. 그 결과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결혼이주민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체류 외국인 내 결혼이주민 비율 역시 2002년 6.7%에서 2007년 10.4%로 증가했음(윤자호, 2022).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국적 취득 이후 중국 내 친인척 초청이 가능했음(안지연·양보균, 2021). 결혼 즉시 국적 취득에서 1998년 들어 결혼 후 2년 뒤 국적 신청 및 국적 취득 후 친인척 초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조선족 여성-한국인 남성 간 혼인 장려는 ‘친인척 방문’이라는 이주 경로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임.
 - 2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이후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은 하락세를 보이는데, 국제결혼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상황 및 노동력 유입과 밀접하다는 점을 방증함.

(2) 친인척 방문동거 체류자격과 ‘노동-불법 이주’ 경로의 형성

- 2002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방안」을 통해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음. 이는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이후 연령 30세로 조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동거 체류자격(F-1-4)을 발급하는 제도였음.²⁾
- 친인척이 있는 대상만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결국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친척을 수소문하거나 서류를 만들고, 위장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사례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음(곽재석, 2019; 최윤철, 2021).
 - 남성은 건설업, 여성은 도소매 서비스업과 비공식 돌봄노동에 종사했는데, 이들에 대한 노

2) 고용노동부 특별고용허가제 연혁 (<https://eps.hrdkorea.or.kr/h2/h2empl/compEmp.do>)

동력 착취 문제가 두드러졌으나 약 20배에 달하는 중국-한국 간 임금 차이는 조선족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과 노동력 착취를 감수하며 한국에 남아 있도록 한 동인이 되었음(안지연·양보균, 2021).

(3) 참여정부 출범과 이민정책 체계화 필요성 대두

- 2000년 전후 참여정부 출범과 맞물리는 시기 한국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국제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 및 체류 외국인의 증가, 둘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셋째 외국인의 국내 체류 유형의 다양화·정주화로 인한 환경 변화 등이 꼽힘(이우영, 2019).
- 참여정부 시기 중국 동포와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국적 취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에 방문한 것임(2003.11.29.). 대통령 방문 이후 2주 넘게 이어진 단식농성은 해제됐는데, 이 방문은 단식농성에서 요구하던 국적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참여정부의 (비교적) 온건한 이민정책의 시그널로 해석되었음.
 - 실제로 참여정부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재외동포도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2007)」를 도입하고, 강제 추방 중단 등의 정책을 실행한 바 있음.³⁾

나. 방문취업제와 조선족 동포의 '합법체류' 증가, 그리고 한계

- 방문취업제란 고용허가제 내 '특례고용 가능 확인 제도'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
 - 구체적인 내용은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 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비전문취업(E-9)에 비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이 방문취업제는 시행 초기 조선족 동포사회의 정체성 고양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음(이진영 외, 2018).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며 국내 체류 방문취업 중국 동포 규모는 증가하고, 방문취업자에게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함에 따라 중국 동포사회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며 동시에 불법체류 요인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임(곽재석, 2019; 박경숙 외, 2019).

3) 유강문, “어느 대통령보다 동포에 따뜻했는데...”, 한겨레, 2009.05.24.

- 하지만 방문취업제는 한국 경제 상황과 정권에 따라 그 규모가 엄격하게 제한되기도 함.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담론이 강해졌는데 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문취업 입국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에 이르렀음.
- 또한, 2006년 설치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 국적 동포과’가 이후 폐지됨으로써 방문취업제는 명실공히 ‘단순노무 인력’ 관리 정책으로 자리하게 됐고, 오히려 고용허가제 내의 차별 문제를 부각하는 결과를 낳았음.
- 한편,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 2008년 1월부터는 조선족에게 재외동포 사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음. 하지만 재외동포 사증 발급의 조건은 학부 이상의 학력 소지자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요구함으로써 실제 사증 취득자는 2,453명에 불과했음(법무부, 2008).

3. 재외동포와 방문취업 자격 비교와 쟁점

- 강력한 노동 이주 유인, 재외동포 제정 당시 재외동포 범위가 담지하고 있던 차별과 시정, 친인척 방문 경로 형성 등 여러 요인이 뒤섞인 결과, 중국 동포 체류자격의 제도적 분화로 이어졌음.
- 현 시점, 재외동포 자격자는 자유로운 출입국과 정주가 허용되지만, 단순노무 분야 취업은 금지됨. 방문취업 자격자는 단순노무 분야에 한정해 취업이 허용되고,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취업 절차를 밟게 되며 체류 기간의 상한이 있음.
- 즉, 제도적으로 중국 동포의 체류자격에 있어 단순노무 인력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이주 분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임.

〈표 1〉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 비교

구 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근거법률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99.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07. 3월) ▪ 출입국관리법률 ('07. 3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재외동포 사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구소련지역(CIS)* 거주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4세대 이후까지 방문취업 사증 발급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11.11.1. 러시아 제외)
체류 기간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3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최초 3년 체류 허가)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대상 (거소신고는 임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 의무)
취업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2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활동제한 범위 고시 사항을 제외하고 취업가능 (단순노무 직업 및 사행행위 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에 따라 46개 산업 분야에서 취업가능(단순노무 업종에 한해 허용)

구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취업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 없음(내국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고용 취업개시 사실,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 변경 등 15일 이내 신고(법무부) 취업교육구직신청 등 “외국인고용법” 특례고용절차에 따라 취업(고용부)

출처: 법무부(2021),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보도자료(2021.12.27.), p. 5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위와 같은 분화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임.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 일자리가 현실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많은 부분 중첩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이창원 외, 202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단순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을 고시하고 있으나, ‘단순노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상 불분명해 실질적인 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이창원 외, 2021) 재외동포 자격자가 불법취업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⁴⁾

III. 중국 동포 노동실태와 현황 - ‘이민자고용조사’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연령대는 50~59세(29.8%)와 60세 이상(28.4%)이 절반 이상임. 특히 방문취업은 50~59세 비율(54.7%)이 매우 높고, 재외동포는 60세 이상(36.6%)과 50~59세(20.7%) 비율이 높은 한편 30~39세(20.7%) 비율 역시 높은 편임.

〈표 2〉 중국 동포 규모 - 성별, 연령별

		규모 (천 명)						비율 (%)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방문 취업	남성	3	10	18	31	4	65	4.2%	15.5%	27.1%	47.4%	5.9%
	여성	1	3	7	27	2	41	2.4%	8.5%	17.5%	66.3%	5.3%
	소계	4	13	25	58	6	106	3.5%	12.8%	23.4%	54.7%	5.6%
재외 동포	남성	9	30	29	33	48	149	5.8%	20.5%	19.3%	22.1%	32.3%
	여성	9	30	17	27	58	142	6.7%	21.0%	11.9%	19.2%	41.2%
	소계	18	60	46	60	106	290	6.2%	20.7%	15.7%	20.7%	36.6%
전체	남성	11	41	46	64	52	214	5.3%	19.0%	21.7%	29.8%	24.2%
	여성	10	33	24	54	61	182	5.7%	18.2%	13.2%	29.7%	33.2%
	소계	22	74	70	118	112	396	5.5%	18.6%	17.8%	29.8%	28.4%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최종 학력은 고졸(41.6%) > 중졸(26.1%) > 초졸 이하(16.8%) > 대졸 이상(15.5%) 순임. 방문취업(31.7%)은 재외동포(24.1%)에 비해 중졸 비율이 높고, 재외동포(18.2%)는 방문취업

4) 이를테면, 방문취업 자격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던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지니게 된다면 하고 있던 일을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

업(8.1%)에 비해 대졸 이상 비율이 높음.

〈표 3〉 최종 학력

		빈도 (명)					비율 (%)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문대 포함)	전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문대 포함)
방문 취업	남성	10,887	19,602	28,275	6,254	65,018	16.7%	30.1%	43.5%	9.6%
	여성	7,068	13,930	17,451	2,274	40,723	17.4%	34.2%	42.9%	5.6%
	소계	17,955	33,533	45,725	8,528	105,741	17.0%	31.7%	43.2%	8.1%
재외 동포	남성	19,373	38,557	64,266	26,554	148,750	13.0%	25.9%	43.2%	17.9%
	여성	29,194	31,295	54,783	26,382	141,654	20.6%	22.1%	38.7%	18.6%
	소계	48,567	69,853	119,049	52,936	290,404	16.7%	24.1%	41.0%	18.2%
전체	남성	30,261	58,160	92,540	32,807	213,768	14.2%	27.2%	43.3%	15.3%
	여성	36,261	45,226	72,234	28,656	182,377	19.9%	24.8%	39.6%	15.7%
	소계	66,522	103,385	164,774	61,463	396,145	16.8%	26.1%	41.6%	15.5%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중국 동포 중 66.1%는 기혼임. 방문취업(69.5%)과 재외동포(64.8%) 모두 10명 중 6~7명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비혼/미혼 상태를 살펴봤을 때 이혼(31.2%)과 사별(27.2%) 비율이 높음.

- 방문취업(47.4%)의 경우 재외동포(26.1%)에 비해 이혼 비율이 높음. 또한, 여성은 사별 비율(방문취업 30.1%, 재외동포 51.5%, 전체 48.5%)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4〉 배우자 유무, 비혼·미혼 상태

		배우자 유무		비혼/미혼 상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결혼한적 없음	이혼	사별
방문취업	남성	64.3%	35.7%	50.4%	46.8%	2.8%
	여성	77.8%	22.2%	21.1%	48.8%	30.1%
	소계	69.5%	30.5%	42.2%	47.4%	10.4%
재외동포	남성	69.3%	30.7%	59.5%	31.4%	9.0%
	여성	60.1%	39.9%	26.8%	21.7%	51.5%
	소계	64.8%	35.2%	41.4%	26.1%	32.5%
전체	남성	67.8%	32.2%	56.4%	36.6%	6.9%
	여성	64.1%	35.9%	26.0%	25.5%	48.5%
	소계	66.1%	33.9%	41.6%	31.2%	27.2%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기혼자 중 배우자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75%이고, 22%는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 기혼·비/미혼 통틀어서 중국 동포 중 77.5%는 자녀가 있음.

- 방문취업은 기혼자 10명 중 약 3명(32.7%)이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데, 특히 남성(40.9%)의 경우 여성(22%)에 비해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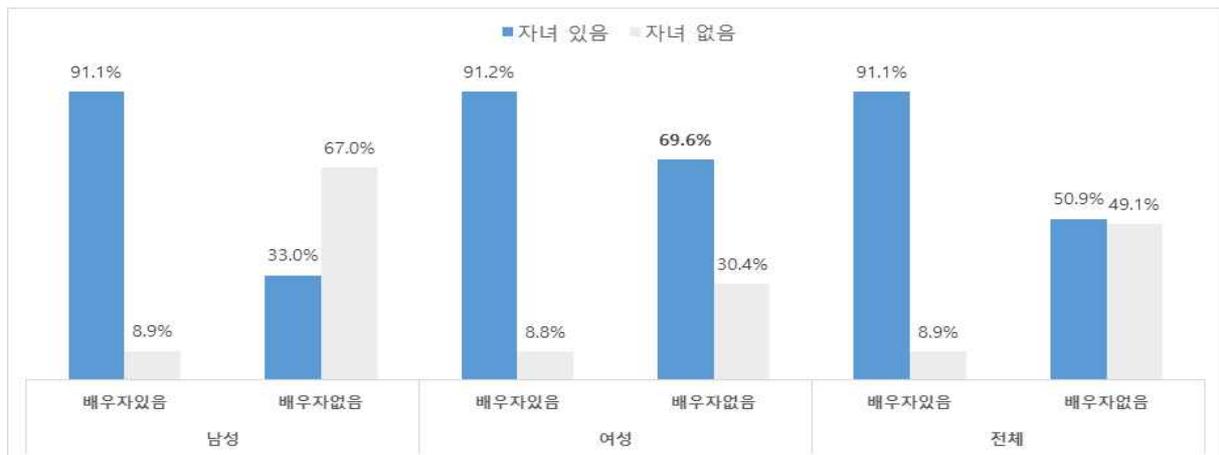
〈표 5〉 배우자 한국 거주 여부, 자녀 유무

		배우자 한국 거주 여부			자녀 유무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한국에서 따로 살고 있음	한국에 거주하지 않음	있음	없음
방문취업	남성	55.8%	3.3%	40.9%	71.1%	28.9%
	여성	75.2%	2.7%	22.0%	89.0%	11.0%
	소계	64.2%	3.1%	32.7%	78.0%	22.0%
재외동포	남성	75.9%	3.0%	21.1%	72.9%	27.1%
	여성	83.4%	2.9%	13.7%	81.8%	18.2%
	소계	79.3%	3.0%	17.7%	77.3%	22.7%
전체	남성	70.1%	3.1%	26.8%	72.4%	27.6%
	여성	81.2%	2.9%	15.9%	83.4%	16.6%
	소계	75.0%	3.0%	22.0%	77.5%	22.5%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성별·혼인상태별로 자녀유무를 살펴보면, 여성 비혼/미혼 중 69.6%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일차적으로는 앞서 살펴봤듯 재외동포와 방문취업 모두 연령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2〕 성별 자녀 유무 - 배우자 유무별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현재 거주지는 경기(44.6%) > 서울(31.3%) 등 수도권 지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지역 거주 이유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족 또는 동료와 같이 거주(37.5%)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남성(18%)은 여성(11.5%)에 비해 취업 비율이 높고, 여성(42.3%)은 남성(33.4%)에 비해 가족 또는 동료와 같이 거주 비율이 높음.

〈표 6〉 현재 거주지

방문취업			재외동포			전체		
지역	빈도 (명)	비율 (%)	지역	빈도 (명)	비율 (%)	지역	빈도 (명)	비율 (%)
경기	48,696	46.1%	경기	127,838	44.0%	경기	176,535	44.6%
서울	36,554	34.6%	서울	87,621	30.2%	서울	124,174	31.3%
대전, 충남, 충북, 세종	7,317	6.9%	대전, 충남, 충북, 세종	24,407	8.4%	대전, 충남, 충북, 세종	31,724	8.0%
인천	4,563	4.3%	인천	18,686	6.4%	인천	23,248	5.9%
부산, 울산, 경남	4,107	3.9%	부산, 울산, 경남	16,179	5.6%	부산, 울산, 경남	20,286	5.1%
광주, 전남, 전북	1,957	1.9%	대구, 경북	6,633	2.3%	대구, 경북	8,400	2.1%
대구, 경북	1,767	1.7%	광주, 전남, 전북	5,491	1.9%	광주, 전남, 전북	7,447	1.9%
강원, 제주	780	0.7%	강원, 제주	3,550	1.2%	강원, 제주	4,330	1.1%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표 7〉 현재 지역 거주 이유

현재 지역 거주 이유	남자	여자	전체
가족 또는 동료와 같이 거주	33.4%	42.3%	37.5%
취업	18.0%	11.5%	15.0%
기타(자녀교육, 분가, 생계곤란으로 거주 면적 축소, 외국인 친구가 많이 사는 동네, 기타)	13.3%	11.9%	12.7%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	13.0%	8.5%	10.9%
더 좋은 주거 환경	9.8%	11.2%	10.4%
집세 상승	8.1%	7.0%	7.6%
주택 구입 또는 거주 면적 확장	3.7%	5.5%	4.5%
결혼	0.5%	2.0%	1.2%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2. 경제활동 상태와 체류자격

-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중 취업자 비율은 65.7%인데, 이는 중국 동포 전체 취업자 비율(66.6%)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임. 중국 동포 중 다수 체류자격이 방문취업과 재외동포이기 때문임. 따라서 방문취업과 재외동포의 노동실태는 어느 정도 ‘중국 동포’의 노동실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음.
- 남성 취업자 비율은 75.5%이고, 여성 취업자 비율은 54.3%임.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남성(18.4%)에 비해 여성(41.3%)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재외동포 여성(44.6%)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비경제활동 상태는 쉬었음(32.6%)과 기타(36.2%) 비율이 높음. ‘기타’의 내용은 연로와 심신장애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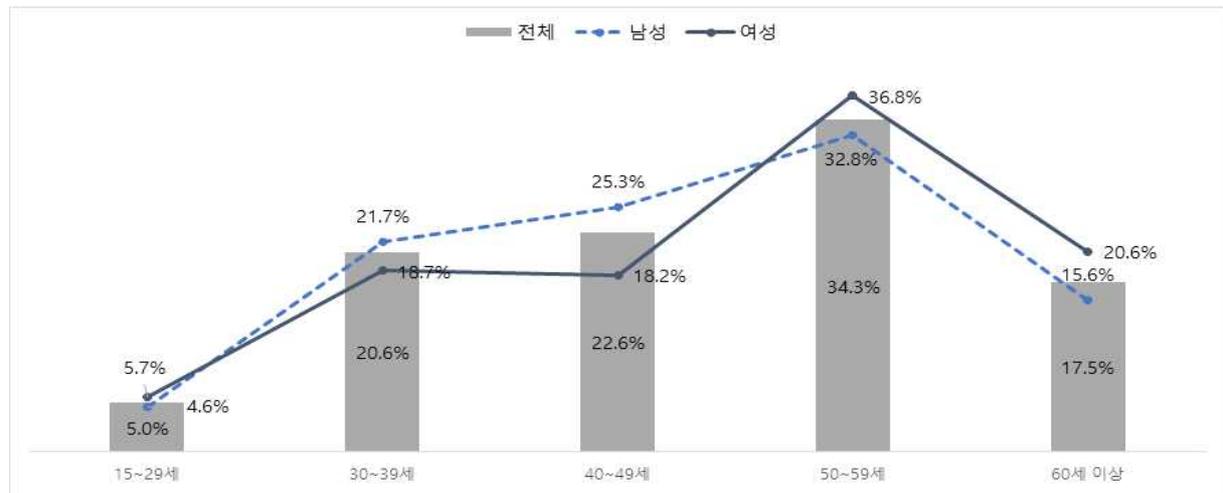
〈표 8〉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상태			비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육아 및 가사	정규교육 기관 통학	진학 및 취업준비	쉬었음	기타
방문취업	남성	83.1%	6.7%	10.2%	2.4%	0.0%	11.2%	71.0%	15.3%
	여성	63.1%	7.2%	29.8%	37.3%	0.0%	2.7%	34.0%	25.9%
	소계	75.4%	6.9%	17.8%	25.0%	0.0%	5.8%	47.1%	22.2%
재외동포	남성	72.2%	5.8%	22.0%	5.6%	1.7%	3.4%	44.6%	44.7%
	여성	51.7%	3.7%	44.6%	39.4%	0.8%	1.9%	22.0%	35.9%
	소계	62.2%	4.8%	33.0%	27.9%	1.1%	2.4%	29.7%	38.9%
전체	남성	75.5%	6.1%	18.4%	5.1%	1.4%	4.7%	49.1%	39.8%
	여성	54.3%	4.5%	41.3%	39.0%	0.6%	2.1%	23.9%	34.3%
	소계	65.7%	5.3%	28.9%	27.4%	0.9%	3.0%	32.6%	36.2%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성별·연령별 취업자 분포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30~49세까지 남성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낮으나 50~59세(남성 32.8%, 여성 36.8%)와 60세 이상(남성 15.6%, 여성 20.6%)은 취업자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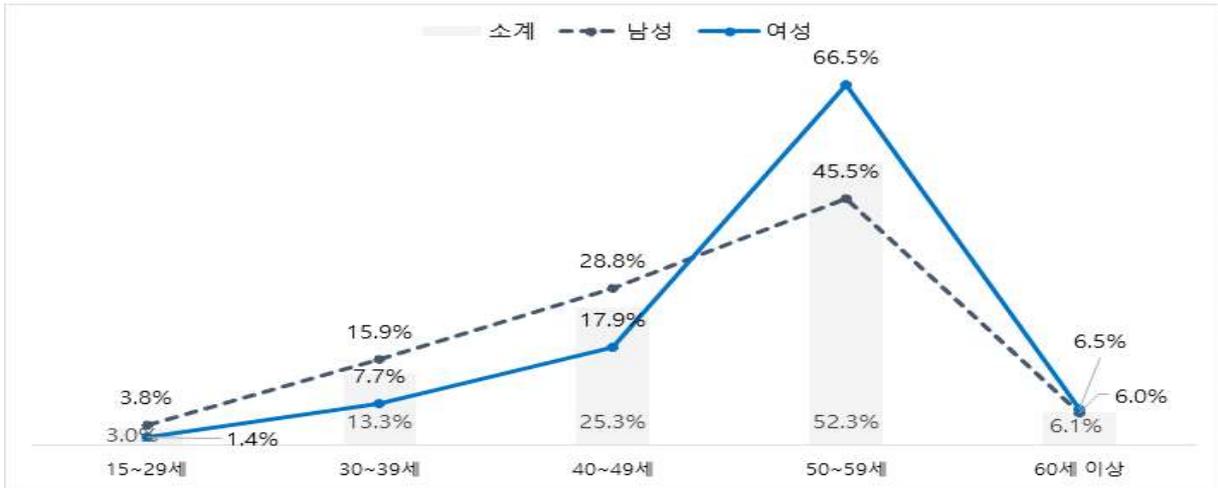
[그림 3] 성별·연령별 취업자 비율 - 방문취업 + 재외동포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이러한 경향은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모두에게서 발견되나, 특히 방문취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방문취업 여성은 15세~49세까지 취업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다가 50~59세 취업자 비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짐(여성 66.5%, 남성 45.5%).

[그림 4] 성별·연령별 취업자 비율 - 방문취업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재외동포 역시 여성은 40세 이후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나, 방문취업에 비해 변화 폭이 크진 않음. 단, 60세 이상의 경우 남성 취업자 비율은 20.5%이고 여성 취업자 비율은 25.6%로 약 5.1%p 차이 남. 이는 40~49세 남성 취업자-여성 취업자 비율 차이와 같음 (남성 23.5%, 여성 8.4%).

[그림 5] 성별·연령별 취업자 비율 - 재외동포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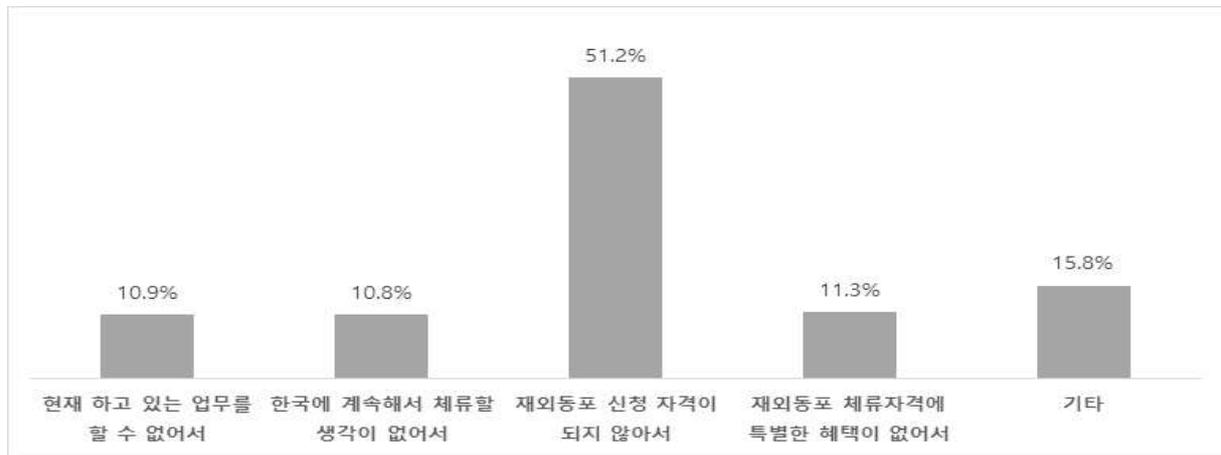
- 재외동포 직전 체류자격은 84.9%가 방문취업으로, 방문취업 취득→재외동포 자격 취득이라는 체류자격 취득 경로가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9〉 재외동포 직전 체류자격

	직전 체류자격 - 재외동포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유학생	결혼이민자	기타
남성	0.0%	89.5%	0.0%	3.2%	7.3%
여성	1.6%	79.8%	6.0%	3.0%	9.7%
전체	0.8%	84.9%	2.8%	3.1%	8.4%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그림 6〕 방문취업자 재외동포 신청하지 않은 이유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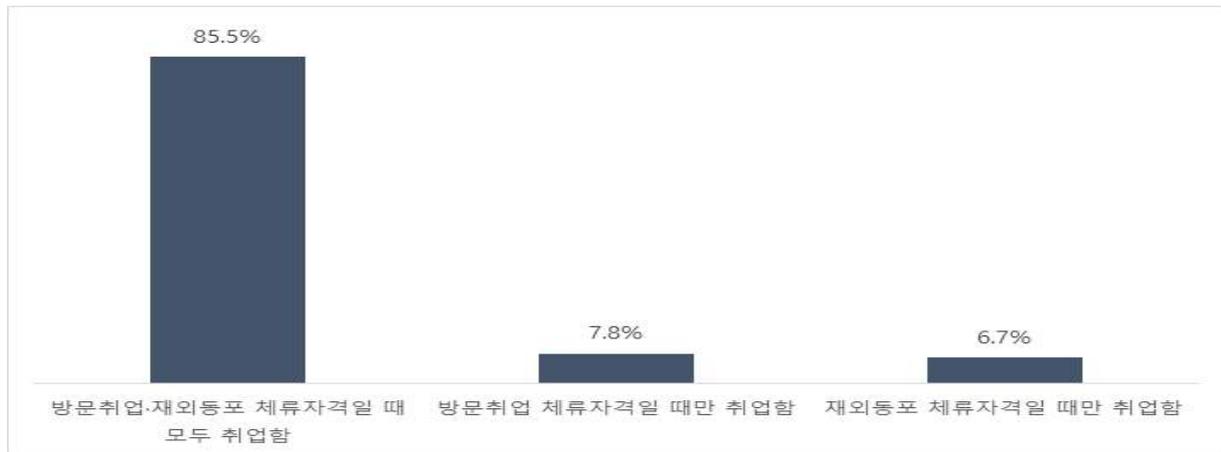
- 방문취업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서(51.2%)가 절반 수준임.
 - 동시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여기거나(11.3%) 현재 하는 업무를 할 수 없어서(10.9%) 등 상대적으로 오랜 체류 기간이 보장되고 취업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약 22.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한국에 정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8%임.
- 방문취업과 재외동포의 한국 취업 경험률은 90.5%임. 단, 재외동포 여성(82.4%)은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 경험률이 낮은 편임.
- 재외동포 한국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방문취업일 때와 현재 모두 취업함(85.5%)이 대다수고, 방문취업 체류자격일 때만 취업하거나(7.8%) 재외동포 체류자격일 때만 취업(6.7%)하는 경우는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음.

〈표 10〉 한국취업 경험 여부

		빈도 (명)		비율 (%)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방문취업	남성	63,008	905	98.6%	1.4%
	여성	38,202	2,484	93.9%	6.1%
	소계	101,209	3,390	96.8%	3.2%
재외동포	남성	150,751	9,631	94.0%	6.0%
	여성	124,910	26,769	82.4%	17.6%
	소계	275,661	36,400	88.3%	11.7%
전체	남성	213,759	10,536	95.3%	4.7%
	여성	163,112	29,253	84.8%	15.2%
	소계	376,870	39,790	90.5%	9.5%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그림 7〕 재외동포 한국 취업경험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 재외동포 한국 체류 기간은 5년~10년 미만(40.9%)과 10년 이상(40.7%) 등 장기체류자 비율이 높음. 하지만 장기체류가 정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음. 정주가 목적이기 보다는, 출입국과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 때문임(김판준, 2014).

〈표 11〉 한국 체류 기간

		한국 체류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방문취업	남성	0.1%	1.0%	10.8%	18.5%	50.4%	19.1%
	여성	0.2%	1.6%	13.4%	16.3%	48.1%	20.3%
	소계	0.2%	1.2%	11.8%	17.7%	49.5%	19.6%

		한국 체류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재외동포	남성	0.1%	0.2%	4.1%	8.7%	36.5%	50.3%
	여성	0.1%	0.2%	4.8%	9.5%	39.0%	46.5%
	소계	0.1%	0.2%	4.4%	9.1%	37.7%	48.5%
전체	남성	0.1%	0.4%	6.2%	11.6%	40.8%	40.8%
	여성	0.1%	0.5%	6.7%	11.0%	41.0%	40.6%
	소계	0.1%	0.5%	6.4%	11.4%	40.9%	40.7%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3. 일자리 특성과 계약

○ 재외동포 근무 지역은 거주지역 분포와 비슷하게 경기(46.8%)와 수도권(24.5%)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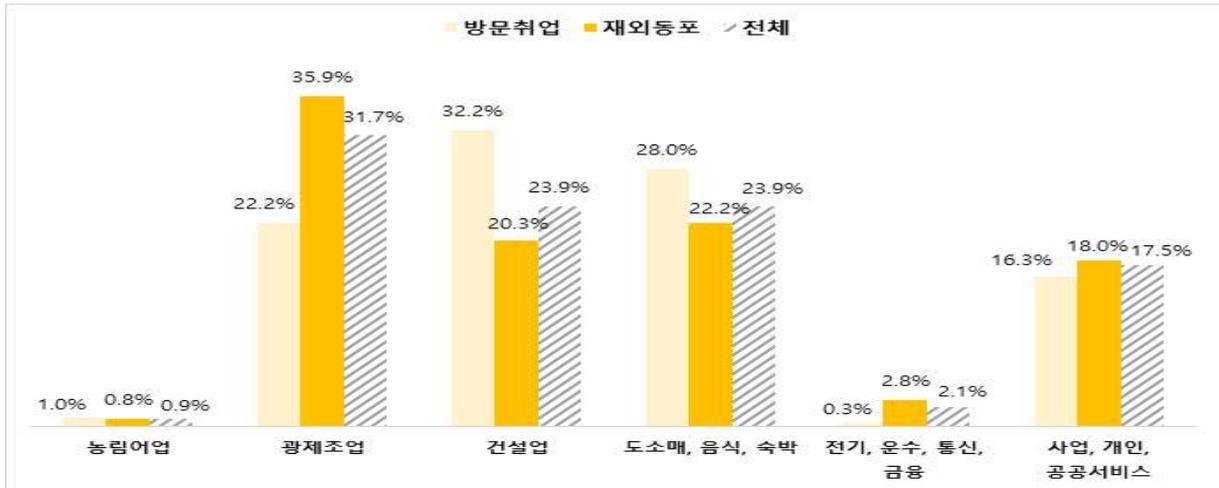
〈표 12〉 근무지역

		근무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전체
방문취업	빈도	19,772	4,282	40,597	3,424	6,820	1,796	2,289	721	79,701
	%	24.8%	5.4%	50.9%	4.3%	8.6%	2.3%	2.9%	0.9%	100.0%
재외동포	빈도	43,918	11,475	81,351	11,446	21,105	4,365	4,199	2,811	180,669
	%	24.3%	6.4%	45.0%	6.3%	11.7%	2.4%	2.3%	1.6%	100.0%
전체	빈도	63,690	15,757	121,948	14,870	27,925	6,162	6,488	3,532	260,370
	%	24.5%	6.1%	46.8%	5.7%	10.7%	2.4%	2.5%	1.4%	100.0%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종사 산업은 광제조업(31.7%) > 건설업(23.9%) > 도소매·음식·숙박업(23.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17.5%) 등 순임.
- 방문취업은 건설업(32.2%) > 도소매·음식·숙박업(28%) > 광제조업(22.2%) > 사업·개인·공공서비스(16.3%) 등 순임.
- 한편 재외동포는 광제조업(35.9%) > 도소매·음식·숙박업(22.2%) > 건설업(2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18%) 등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8] 종사 산업 - 체류자격별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중국 동포 남성 종사 산업은 건설업(37.1%) > 광제조업(35.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12.3%) > 도소매·음식·숙박업(11.6%) 등 순임. 광제조업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반면, 건설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사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6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사업·개인·공공서비스(23.5%) 비율이 높은 편임.

- 중국 동포 여성 종사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44.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26%) > 광제조업(24.7%) 등 순임. 광제조업은 30~39세(44.7%)까지는 비율이 높으나, 40세 이후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함.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59세 이전까지 종사 비율이 높아지나, 60세 이상은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대신 사업·개인·공공서비스(57.1%) 비율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함.

〈표 13〉 종사 산업 - 성별·연령대별

		종사 산업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남자	15~29세	0.0%	40.9%	16.0%	28.8%	3.2%	11.1%
	30~39세	0.0%	46.1%	29.9%	13.6%	3.9%	6.5%
	40~49세	0.7%	37.2%	38.9%	10.8%	2.0%	10.4%
	50~59세	0.7%	33.3%	41.8%	10.0%	1.7%	12.4%
	60세 이상	2.1%	23.7%	40.8%	8.2%	1.6%	23.5%
	소계	0.8%	35.9%	37.1%	11.6%	2.3%	12.3%
여자	15~29세	0.0%	43.5%	0.0%	39.9%	5.2%	11.4%
	30~39세	0.0%	44.7%	1.5%	35.5%	6.0%	12.3%
	40~49세	2.2%	31.9%	2.5%	48.7%	0.8%	14.0%
	50~59세	1.1%	18.6%	4.0%	52.2%	0.3%	23.7%
	60세 이상	1.5%	6.1%	0.6%	34.7%	0.0%	57.1%
	소계	1.1%	24.7%	2.4%	44.1%	1.7%	26.0%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중국 동포 직업은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40.3%) > 단순노무종사자(32.9%) > 서비스·판매종사자(16.3%)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9%) > 사무종사자(4.1%) 등 순임
- 남성은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55.1%) 비율이 높고,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38.6%)와 서비스·판매종사자(32.1%) 비율이 높음.

〈표 14〉 직업 - 성별·체류자격별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남성	방문취업	0.1%	0.8%	4.4%	0.7%	55.3%	38.7%
	재외동포	7.3%	4.3%	7.4%	0.7%	55.0%	25.3%
	소계	5.1%	3.2%	6.5%	0.7%	55.1%	29.4%
여성	방문취업	0.0%	0.1%	34.3%	0.8%	14.1%	50.7%
	재외동포	9.4%	7.2%	31.3%	0.2%	17.3%	34.7%
	소계	7.1%	5.4%	32.1%	0.3%	16.5%	38.6%
전체	방문취업	0.1%	0.6%	14.4%	0.7%	41.5%	42.7%
	재외동포	8.1%	5.4%	17.0%	0.5%	39.9%	29.1%
	소계	5.9%	4.1%	16.3%	0.5%	40.3%	32.9%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39.4%) > 일용근로자(32.4%) > 임시근로자(23.8%) 등 순으로, 임시·일용 등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 이상(56.2%)인 것으로 파악됨. 여성은 상용근로자 비율(36.7%)이 남성(41.1%)에 비해 낮음.
- 남성(36.2%)은 여성(26.1%)에 비해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고, 여성(32.3%)은 남성(18.6%)에 비해 임시근로자 비율이 낮음.
- 농림어업(71.7%), 건설업(86%),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74.9%)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광제조업(67.1%)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편임.

〈표 15〉 종사상지위

		종사상지위						
		상용 근로자	비정규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전체			
성별	남성	41.1%	18.6%	36.2%	54.8%	1.1%	2.7%	0.3%
	여성	36.7%	32.3%	26.1%	58.4%	1.0%	3.4%	0.4%
체류 자격	방문취업	34.5%	25.4%	39.0%	64.4%	0.1%	1.0%	0.1%
	재외동포	41.6%	23.1%	29.5%	52.6%	1.5%	3.9%	0.5%

		종사상지위						
		상용 근로자	비정규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전체			
종사 산업	농림어업	21.9%	7.3%	64.4%	71.7%	0.0%	6.3%	0.0%
	광제조업	67.1%	22.1%	10.1%	32.2%	0.4%	0.2%	0.0%
	건설업	12.7%	19.4%	66.6%	86.0%	0.7%	0.5%	0.1%
	도소매, 음식, 숙박	43.1%	29.3%	16.2%	45.5%	3.0%	7.4%	1.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6.8%	17.9%	16.8%	34.7%	0.6%	12.8%	5.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0.7%	26.7%	48.2%	74.9%	0.2%	4.2%	0.0%
전체		39.4%	23.8%	32.4%	56.2%	1.1%	3.0%	0.4%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담당업무 직무 수준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58%)”이 절반 이 상이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30.2%)” >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8.4%)” >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3.4%)” 순임.
- 여성에 비해 남성은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과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비율이 높는데, 이는 남성의 주된 종사 산업이 광제조업과 건설업이고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6〉 담당업무 직무 수준

		담당업무 직무 수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성별	남성	49.8%	35.1%	11.0%	4.1%
	여성	71.3%	22.2%	4.2%	2.4%
체류 자격	방문취업	67.2%	24.4%	5.7%	2.7%
	재외동포	53.7%	32.9%	9.7%	3.8%
종사 산업	농림어업	88.0%	12.0%	0.0%	0.0%
	광제조업	53.7%	36.3%	7.3%	2.8%
	건설업	45.1%	34.7%	16.0%	4.2%
	도소매, 음식, 숙박	75.5%	17.7%	4.9%	1.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5.8%	32.2%	3.7%	18.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61.7%	28.8%	5.2%	4.3%
전체		58.0%	30.2%	8.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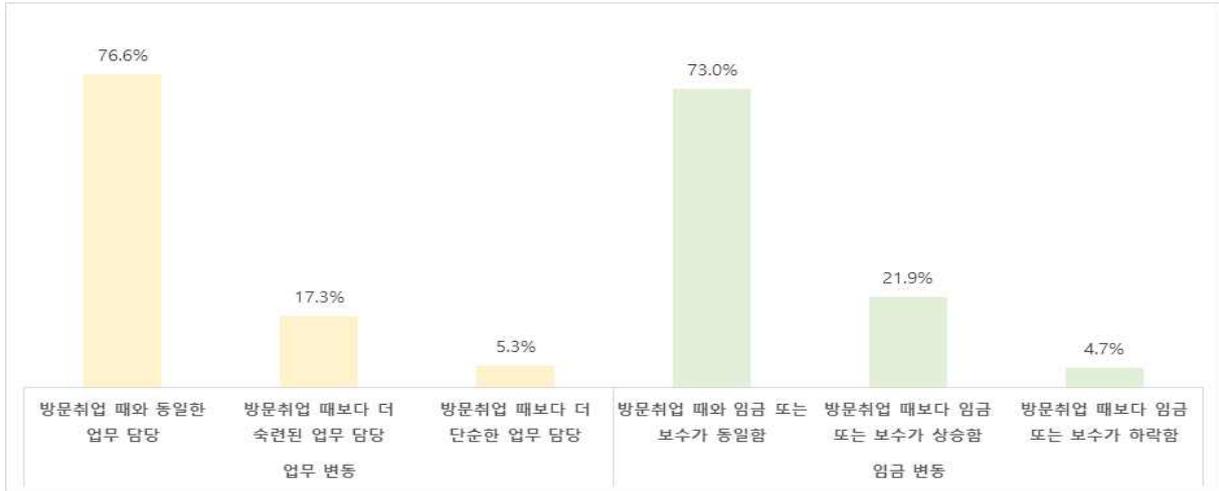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재외동포는 방문취업에 비해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비율이 높으나, 이를 “재외동포가 방문취업에 비해서 더 숙련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됨.
- 재외동포 대상으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일 때와 하는 일의 속성과 임금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76.6%)”, “방문취업일 때와 임금 또는 보수가 동일한 경우

(73%)”가 다수이기 때문임.

- 재외동포가 더 숙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다른 속성의 일을 해서라기보다 근속과 경력이 길어지며 숙련이 형성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재외동포 현재 업무·임금 특성 - 체류자격 방문취업일 때와 비교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 한국 취업 시 출입국관리소 또는 고용센터 신고 여부는 “신고”가 59.4%이고, “미신고”가 40.6%임. 또한, 현재 직장(혹은 최근 직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50.2%에 불과함.

[표 17] 한국 취업 신고여부, 현재 직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한국 취업 신고여부		현재 직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방문취업	남성	62.3%	37.7%	51.4%	48.6%
	여성	61.5%	38.5%	46.0%	54.0%
	소계	62.0%	38.0%	49.3%	50.7%
재외동포	남성	61.8%	38.2%	54.9%	45.1%
	여성	54.3%	45.7%	45.2%	54.8%
	소계	58.4%	41.6%	50.5%	49.5%
전체	남성	62.0%	38.0%	53.8%	46.2%
	여성	56.0%	44.0%	45.3%	54.7%
	소계	59.4%	40.6%	50.2%	49.8%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 취업이나 근무처 변경 시 미신고 이유는 “취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46.9%)” > “일용직이라서(21.2%)” > “신고 방법을 몰라서(12.3%)” 등 순임. 방문취업과 달리 재외동포는 별도의 취업 절차가 없다는 점, 그리고 ‘취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와 ‘신고 방법을 몰라서’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동 현장에서 취업 신고 등의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8〉 취업·근무처 변경 시 출입국관리소·고용센터에 미신고 이유

		취업신고 미신고 이유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방법을 몰라서	번거롭고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회사에서 대신 해 준다고 해서	일용직 이라서	기타	전체
방문취업	빈도	17,681	3,969	2,462	833	2,714	10,005	793	38,458
	%	46.0%	10.3%	6.4%	2.2%	7.1%	26.0%	2.1%	100.0%
재외동포	빈도	54,085	14,829	6,018	2,555	11,577	22,509	2,998	114,570
	%	47.2%	12.9%	5.3%	2.2%	10.1%	19.6%	2.6%	100.0%
전체	빈도	71,767	18,797	8,480	3,388	14,291	32,514	3,791	153,028
	%	46.9%	12.3%	5.5%	2.2%	9.3%	21.2%	2.5%	100.0%

4. 노동시간과 임금, 경력과 이직

-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 표준노동시간(51.9%) 비율이 절반이나, 50시간~60시간 미만(16.5%)과 60시간 이상(16.7%) 등 장시간 노동 비율이 3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30.8%)보다 여성(36.6%)이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다수 종사 산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장시간 노동 비율이 49.6%로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한편, 농림어업은 20시간 미만(10.5%) 등 단시간 노동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음

〈표 19〉 주당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							
		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일시휴직
성별	남성	1.6%	3.2%	6.5%	57.1%	17.6%	13.2%	30.8%	0.8%
	여성	5.1%	6.6%	8.1%	43.0%	14.4%	22.2%	36.6%	0.7%
체류 자격	방문취업	2.4%	3.4%	8.4%	49.2%	15.2%	20.5%	35.7%	0.9%
	재외동포	3.2%	5.0%	6.5%	52.8%	16.9%	14.9%	31.8%	0.7%
종사 산업	농림어업	10.5%	8.2%	20.2%	46.1%	15.0%	0.0%	15.0%	0.0%
	광제조업	0.5%	1.3%	2.2%	64.2%	23.0%	8.0%	31.0%	0.9%
	건설업	3.0%	5.3%	10.4%	59.7%	13.3%	7.9%	21.2%	0.4%
	도소매, 음식, 숙박	2.4%	5.7%	8.5%	33.0%	15.8%	33.8%	49.6%	0.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3.8%	10.1%	9.3%	62.2%	5.1%	8.7%	13.8%	0.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6.0%	6.8%	8.8%	43.9%	11.2%	22.6%	33.8%	0.7%
전체		2.7%	4.5%	7.1%	51.9%	16.5%	16.7%	33.2%	0.7%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월 소득구간은 200만원~300만원 미만(53.9%) > 300만원 이상(23.2%) > 100만원~200만원 미만(19.9%) 등 순임. 남성(34.6%)은 여성(4.6%)에 비해 300만원 이상 비율이 30%p 높고, 여성(32.2%)은 남성(12.5%)에 비해 100만원~200만원 미만 비율이 높음. 이러한 차이는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광제조업, 건설업)과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20〉 월 소득

		월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성별	남성	0.8%	12.5%	52.2%	34.6%
	여성	6.4%	32.2%	56.8%	4.6%
체류 자격	방문취업	1.9%	19.3%	56.3%	22.4%
	재외동포	3.4%	20.2%	52.8%	23.6%
종사 산업	농림어업	26.4%	47.7%	15.2%	10.7%
	광제조업	1.2%	15.5%	62.4%	21.0%
	건설업	1.0%	10.9%	38.9%	49.2%
	도소매, 음식, 숙박	4.4%	27.7%	61.0%	7.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7%	19.4%	53.6%	26.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6.1%	29.9%	52.2%	11.9%
전체		2.9%	19.9%	53.9%	23.2%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근속은 6개월 미만(45.4%) > 3년 이상(25.7%) 등 순으로, 전반적으로 1년 미만 근속(51.9%)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표 21〉 참조).
 - 중국 동포 10명 중 1~2명(18.8%)이 지난 1년 이직을 경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표 22〉 참조).
 - 이직 횟수는 1회(84.4%)가 대부분이나, 2회 이상(15.6%)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일용직 비율이 많은 농림어업(36.9%)과 건설업(25.4%)은 2회 이상 이직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음.

〈표 21〉 근속

		근속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성별	남성	44.4%	5.6%	13.2%	8.4%	28.3%
	여성	46.9%	8.0%	14.5%	9.2%	21.4%
체류 자격	방문취업	46.8%	7.6%	14.0%	9.9%	21.7%
	재외동포	44.7%	6.1%	13.6%	8.2%	27.4%

		근속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종사 산업	농림어업	38.4%	6.6%	5.4%	2.7%	46.9%
	광제조업	40.2%	6.8%	15.1%	9.4%	28.5%
	건설업	54.4%	3.4%	7.2%	6.5%	28.5%
	도소매, 음식, 숙박	45.2%	9.8%	16.7%	9.7%	18.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39.0%	10.7%	9.0%	15.9%	25.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43.7%	5.5%	17.0%	8.6%	25.2%
전체		45.4%	6.5%	13.7%	8.7%	25.7%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표 22〉 지난 1년 이직 경험, 이직 횟수

		지난 1년 이직 경험	지난 1년 이직 횟수		
		“있음”	1회	2회	3회 이상
성별	남성	19.3%	83.9%	8.5%	7.6%
	여성	18.1%	85.3%	7.8%	6.8%
체류 자격	방문취업	16.9%	84.7%	5.2%	10.1%
	재외동포	19.7%	84.3%	9.5%	6.2%
종사 산업	농림어업	20.0%	63.1%	26.7%	10.2%
	광제조업	19.9%	88.7%	7.4%	3.9%
	건설업	20.9%	74.6%	12.1%	13.3%
	도소매, 음식, 숙박	19.4%	86.8%	5.5%	7.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8.2%	82.0%	18.0%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1%	91.2%	5.1%	3.8%
전체		18.8%	84.4%	8.3%	7.3%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지난 1년 이직을 경험한 중국 동포 중 54.2%가 이직 시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으며, 특히 농림어업(77.2%)과 광제조업(75.7%), 전기·운수·통신·금융(85.1%), 사업·개인·공공서비스(65.3%)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직 이유는 일거리가 없어서·사업부진(27.5%) > 이전 직장 근로조건 불만족(23%) > 개인적 이유(19.9%) > 임시 또는 계절적 일 완료(17.2%) 등 순임. 결국 근로조건 불만족이나 개인적 이유와 같은 개인의 판단이나 상황에 의한 이유보다는 일거리가 없거나 계약 만료 등의 사업장 상황에 의한 이직이 더 잦은 것임.
- 건설업은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45.5%)가, 전기·운수·통신·금융은 이직 직장 휴·폐업(21%)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 이직 시 업종 변경 여부, 이직 이유

		업종 변경 여부		이직 이유					
		동일 업종	다른 업종	이전 직장 근로조건 불만족	개인적 이유*	이전 직장 휴·폐업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기타
성별	남성	46.7%	53.3%	21.3%	16.9%	4.6%	23.7%	28.1%	5.5%
	여성	44.2%	55.8%	26.0%	25.2%	7.8%	6.1%	26.5%	8.4%
체류 자격	방문취업	48.0%	52.0%	20.1%	16.1%	5.1%	26.2%	26.4%	6.2%
	재외동포	45.0%	55.0%	24.1%	21.4%	6.0%	13.9%	27.9%	6.7%
종사 산업	농림어업	22.8%	77.2%	15.0%	35.2%	0.0%	15.3%	34.5%	0.0%
	광제조업	24.3%	75.7%	32.1%	19.4%	6.4%	5.8%	27.7%	8.6%
	건설업	64.3%	35.7%	15.6%	7.0%	2.3%	45.5%	28.0%	1.7%
	도소매, 음식, 숙박	64.0%	36.0%	21.6%	28.1%	7.3%	8.3%	24.8%	9.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4.9%	85.1%	14.6%	31.2%	21.0%	0.0%	33.2%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4.7%	65.3%	18.9%	29.9%	6.1%	8.3%	30.2%	6.6%
전체		45.8%	54.2%	23.0%	19.9%	5.7%	17.2%	27.5%	6.6%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개인적 이유: 개인, 가족적인 이유, 육아 또는 가사,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제약, 정년퇴직, 나이가 많음.

○ 경력은 3년 이상(65.5%)이 2/3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 2년~3년 미만(12.2%) > 1년~2년 미만(10.3%) 등 순임.

〈표 24〉 경력

		경력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성별	남성	6.1%	4.6%	9.3%	11.2%	68.7%
	여성	9.3%	6.0%	11.9%	13.6%	59.1%
체류 자격	방문취업	5.6%	5.8%	11.3%	14.8%	62.5%
	재외동포	8.1%	4.9%	9.9%	11.0%	66.2%
종사 산업	농림어업	16.0%	1.3%	19.0%	5.4%	58.2%
	광제조업	8.4%	7.7%	12.1%	12.0%	59.8%
	건설업	4.7%	2.1%	7.5%	8.9%	76.8%
	도소매, 음식, 숙박	7.3%	4.2%	11.0%	14.4%	63.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7.1%	8.5%	12.6%	6.9%	55.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7.3%	5.8%	9.3%	14.7%	62.9%
전체		7.3%	5.2%	10.3%	12.2%	65.1%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구직경로는 “한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28.7%)”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20%)”, 혹은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지인(15.4%) 등 개인적인 인맥 비율(64.1%)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그 다음으로는 여행사나 직업소개소(14%) > 기타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등(12.6%) 순임.

- 하이코리아 등 한국 정부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경유해 구직하는 경우(2.5%)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5〉 구직 경로 - 체류자격별

	방문취업	재외동포	전체
한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	31.4%	27.8%	28.7%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21.7%	19.4%	20.0%
여행사나 직업소개소	16.8%	13.0%	14.0%
기타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등	9.3%	13.7%	12.6%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본국 내 친구나 아는 사람	11.7%	10.1%	10.5%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본국 내 가족이나 친척	4.7%	5.0%	4.9%
한국 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함	1.5%	4.9%	4.0%
한국 정부의 외국국적동포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하이코리아)	1.9%	2.7%	2.5%
기타	1.0%	3.4%	2.8%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5. 사회보험과 안전, 부당대우 경험

-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97%) > 산재보험(58.4%) > 고용보험(51.1%) > 국민연금(47.2%) 순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당연가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재보험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음.
- 농림어업의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65.6%) 비율이 유난히 높음. 이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단시간 노동 형태가 많으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장벽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6〉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모르겠음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모르겠음
성별	남성	55.7%	38.8%	5.5%	65.0%	28.7%	6.4%
	여성	43.7%	52.3%	4.1%	47.6%	46.5%	5.9%
체류 자격	방문취업	49.2%	44.0%	6.8%	56.6%	36.2%	7.2%
	재외동포	52.0%	43.8%	4.1%	59.2%	35.1%	5.7%
종사 산업	농림어업	32.0%	68.0%	0.0%	34.4%	65.6%	0.0%
	광제조업	68.5%	27.4%	4.0%	75.9%	19.7%	4.4%
	건설업	43.3%	50.4%	6.3%	56.1%	35.5%	8.5%
	도소매, 음식, 숙박	51.2%	45.0%	3.9%	53.5%	41.5%	5.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9.6%	45.3%	5.2%	60.0%	32.6%	7.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0.5%	62.9%	6.6%	35.9%	56.0%	8.0%
	전체	51.1%	43.9%	5.0%	58.4%	35.4%	6.2%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표 27〉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모르겠음	가입되어 있음	가입되어 있지 않음	모르겠음
성별	남성	40.2%	57.3%	2.6%	94.9%	4.5%	0.6%
	여성	24.0%	74.4%	1.6%	95.4%	3.7%	0.9%
체류 자격	방문취업	34.3%	63.3%	2.4%	93.3%	5.9%	0.8%
	재외동포	32.2%	65.8%	2.0%	95.8%	3.5%	0.7%
종사 산업	농림어업	21.6%	78.4%	0.0%	82.4%	17.6%	0.0%
	광제조업	67.5%	30.0%	2.5%	97.9%	1.5%	0.6%
	건설업	42.7%	55.3%	2.0%	97.0%	3.0%	0.0%
	도소매, 음식, 숙박	44.6%	53.7%	1.7%	96.9%	2.4%	0.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2.7%	55.7%	1.7%	95.1%	4.9%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1.8%	75.8%	2.3%	96.5%	3.3%	0.2%
전체		47.2%	50.7%	2.1%	97.0%	2.6%	0.4%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중국 동포 중 1~2명(15.3%)이 지난 1년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응답함. 그 내용은 작업 중 부상(3.7%) ≥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3.7%) > 직장 내 한국인과 갈등(2.7%) >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한 어려움(2.1%) 등임.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작업 중 부상과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를 더 많이 겪고, 여성은 남성 에 비해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한 어려움과 직장내 한국인과 갈등 등 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28〉 지난 1년 직장에서의 어려움

		지난 1년 직장에서의 어려움								
		작업 중 부상	작업으로 인한 질병	임금 체불 또는 부당 해고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한 어려움	직장내 한국인과 갈등	욕설	여권 압류 또는 외출 통제	신체적 위해 및 기타	해당 사항 없음
성별	남성	4.9%	1.4%	4.3%	1.9%	2.1%	0.5%	0.0%	1.0%	83.9%
	여성	2.0%	1.5%	2.8%	2.5%	3.6%	0.6%	0.3%	0.8%	85.9%
체류 자격	방문취업	3.6%	1.1%	4.0%	1.4%	2.2%	0.4%	0.2%	1.0%	86.1%
	재외동포	3.8%	1.6%	3.6%	2.4%	2.9%	0.6%	0.1%	0.9%	84.2%
전체		3.7%	1.4%	3.7%	2.1%	2.7%	0.5%	0.1%	0.9%	84.7%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별로 지난 1년 직장 내 어려움을 살펴봤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위해 및 기타(1.2%)나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4.1%) 경험률이 조금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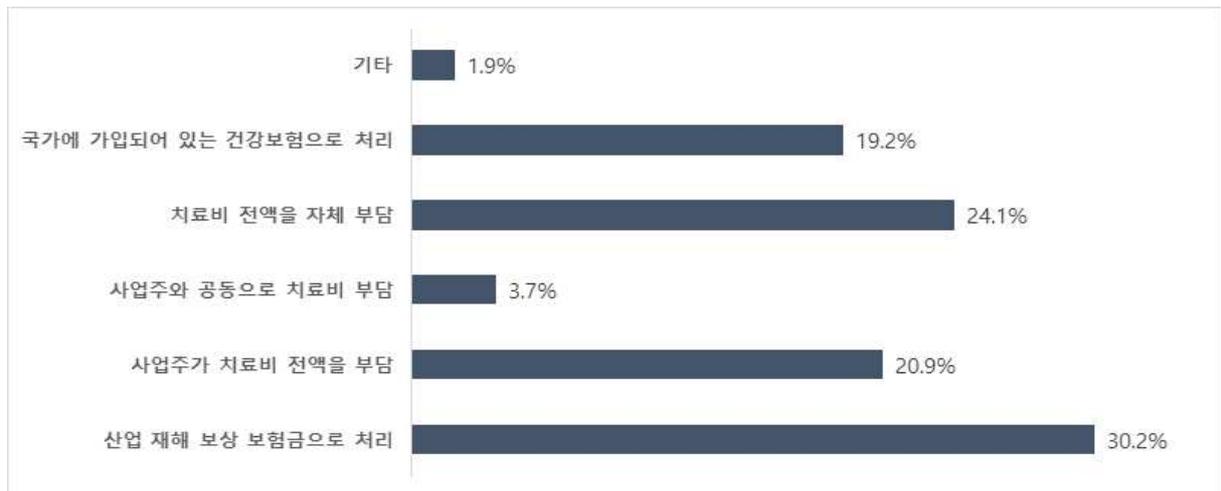
〈표 29〉 지난 1년 직장에서의 어려움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별

		작업 중 부상	작업으로 인한 질병	임금 체불 또는 부당 해고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한 어려움	직장내 한국인과 갈등	욕설	여권 압류 또는 외출 통제	신체적 위해 및 기타	해당 사항 없음
체결 여부	예	3.8%	1.4%	3.3%	2.1%	2.8%	0.5%	0.1%	0.6%	85.4%
	아니요	3.6%	1.5%	4.1%	2.2%	2.7%	0.5%	0.2%	1.2%	84.0%
전체		3.7%	1.4%	3.7%	2.1%	2.7%	0.5%	0.1%	0.9%	84.7%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중국 동포들의 치료비 부담 방식은 산재 보상 보험금 처리(30.2%)가 가장 높고 사업주 전액 부담(20.9%)이나 건강보험 처리(19.2%) 비율 역시 일정 부분 확인되나, 치료비 전액 자체 부담(24.1%) 비율 역시 낮지 않은 수준임.

〔그림 10〕 작업 중 부상 치료비 부담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부가조사

6. 주거와 삶

- 중국 동포 중 45.6%는 1인 가구이고, 그 다음으로 2인 가구(32.5%) > 3인 가구(12.8%) > 4인 이상 가구(9%) 순임.
- 남성은 여성에 비해 1인 가구(45.4%) 비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2인 가구(37.2%)·3인 가구(19.4%)·4인 이상 가구(14.8%) 비율이 높음. 방문취업(54.4%)이 재외동포(32.5%)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농림어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4인 이상 가구(26.7%) 비율이 높음.

〈표 30〉 가구원 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성별	남성	45.4%	32.0%	11.8%	10.9%
	여성	28.6%	37.2%	19.4%	14.8%
체류 자격	방문취업	54.4%	28.8%	10.7%	6.1%
	재외동포	32.5%	36.1%	16.6%	14.8%
종사 산업	농림어업	45.2%	28.1%	0.0%	26.7%
	광제조업	47.7%	31.5%	11.6%	9.1%
	건설업	46.8%	32.0%	12.2%	8.9%
	도소매, 음식, 숙박	43.5%	36.5%	14.1%	5.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35.9%	33.0%	20.6%	10.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44.4%	30.0%	13.6%	12.0%
전체		45.6%	32.5%	12.8%	9.0%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거처 종류는 일반주택(79.5%) > 아파트(10.7%) > 기타(5.7%) > 기숙사(7%) 등 순임. 점유 형태는 2/3 가량(66.5%)이 월세임. 농림어업(28.5%)과 광제조업(16.1%)의 경우, 회사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 거처 종류, 점유 형태

		거처종류*				점유형태			
		일반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자기 집	전세	월세	무상 (회사, 학교 등이 제공)
성별	남성	79.9%	10.9%	4.2%	5.1%	10.4%	12.2%	66.1%	11.2%
	여성	78.4%	15.2%	1.0%	5.4%	16.4%	16.8%	59.8%	7.0%
체류 자격	방문취업	85.4%	6.2%	2.8%	5.6%	4.5%	10.0%	74.1%	11.4%
	재외동포	77.0%	15.3%	2.7%	5.1%	16.3%	15.9%	59.3%	8.5%
종사 산업	농림어업	54.1%	23.8%	7.0%	15.1%	19.9%	0.0%	51.5%	28.5%
	광제조업	70.5%	14.9%	9.4%	5.2%	12.3%	11.2%	60.4%	16.1%
	건설업	87.7%	7.2%	1.3%	3.8%	7.4%	13.3%	72.3%	7.0%
	도소매, 음식, 숙박	82.0%	8.9%	1.7%	7.4%	10.4%	11.7%	71.6%	6.3%
	전기, 운수, 통신, 금융	67.4%	18.5%	4.9%	9.3%	24.4%	12.8%	54.8%	7.9%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84.0%	8.7%	1.4%	5.9%	8.9%	17.6%	64.9%	8.6%
전체		79.5%	10.7%	4.1%	5.7%	10.4%	12.9%	66.5%	10.2%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일반주택: 단독주택, 원룸, 연립, 다세대 등

기타: 오피스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쉼터 등 사회복지 시설, 숙박업소 객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 월세는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38.4%) >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24.7%) >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18.9%)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12.8%) 등 순임.

- 평균 월세 지출금액을 알 수 없어 비교하기 힘들지만, 월세 구간 분포를 살펴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적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32〉 월세 구간

		월세 구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성별	남성	0.4%	5.0%	26.7%	39.4%	16.5%	11.8%	0.3%
	여성	0.2%	4.1%	22.9%	35.9%	21.8%	14.6%	0.5%
체류 자격	방문취업	0.2%	4.0%	26.5%	45.4%	14.7%	9.1%	0.0%
	재외동포	0.3%	4.9%	24.4%	34.4%	20.7%	14.7%	0.5%
종사 산업	농림어업	0.0%	7.7%	25.8%	35.2%	23.1%	8.1%	0.0%
	광제조업	0.9%	5.5%	26.8%	42.1%	14.0%	10.7%	0.0%
	건설업	0.4%	3.0%	25.4%	37.1%	20.7%	13.5%	0.0%
	도소매, 음식, 숙박	0.2%	3.5%	20.6%	34.6%	23.8%	15.9%	1.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3.3%	5.6%	38.1%	38.9%	14.1%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0.2%	6.0%	28.2%	40.1%	15.0%	10.5%	0.1%
전체		0.5%	4.4%	24.7%	38.4%	18.9%	12.8%	0.4%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중국 동포 중 16.5%는 지난 1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남성(13.6%)에 비해 여성(19.8%)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고, 또 실업자의 경우 40%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
-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은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받지 못함(47.3%) > 공과금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 있음(24.7%) >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 잃은 적 있음(16.1%) 등 순임.

〈표 33〉 지난 1년 경제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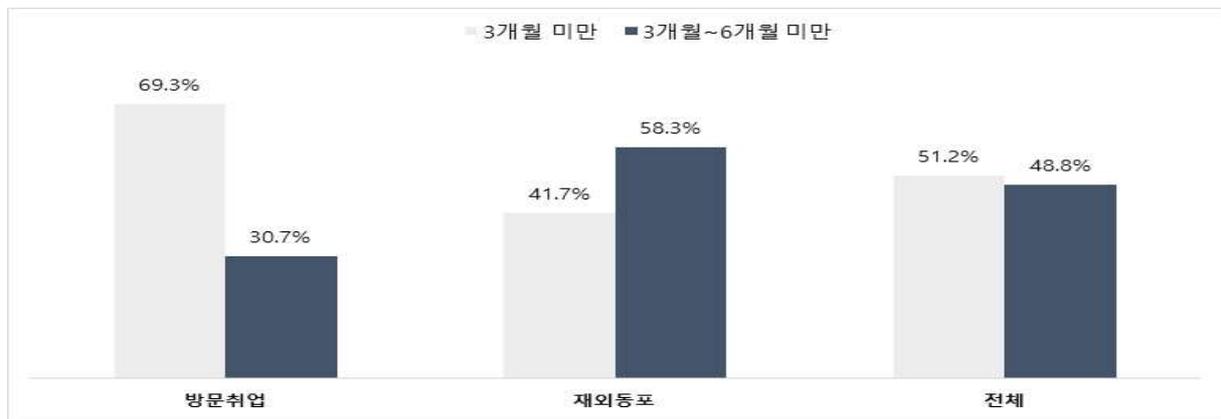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적 어려움						
			끼니를 거른 적이 있음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음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	집세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음	기타
성별	남성	13.6%	4.1%	43.2%	7.2%	17.6%	24.7%	7.9%	13.4%
	여성	19.8%	4.1%	50.6%	9.5%	14.9%	24.7%	5.4%	13.9%
체류 자격	방문취업	17.7%	1.9%	43.4%	9.0%	16.3%	29.4%	8.5%	14.5%
	재외동포	16.0%	5.0%	48.8%	8.3%	16.0%	22.8%	5.7%	13.3%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10.8%	3.6%	42.2%	11.7%	8.9%	25.3%	6.1%	18.7%
	실업자	40.0%	6.5%	31.1%	8.1%	41.1%	28.4%	12.0%	11.7%
	비경제활동인구	24.9%	4.0%	57.1%	5.5%	15.8%	23.0%	5.3%	9.2%

		경제적 어려움 경험	경제적 어려움						기타
			끼니를 거른 적이 있음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음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	집세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음	
종사 산업	농림어업	16.6%	9.4%	49.5%	0.0%	7.9%	42.6%	0.0%	0.0%
	광제조업	7.6%	2.3%	38.1%	16.4%	9.5%	22.5%	11.2%	14.3%
	건설업	9.6%	4.0%	47.8%	12.2%	6.3%	23.0%	10.8%	8.8%
	도소매, 음식, 숙박	14.5%	2.3%	37.2%	12.1%	11.9%	26.3%	1.7%	27.5%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4.1%	5.8%	48.4%	5.5%	5.7%	26.4%	3.4%	21.3%
전체		16.5%	4.1%	47.3%	8.5%	16.1%	24.7%	6.5%	13.6%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중국 동포 실업자 모두 구직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3개월 미만(51.2%)과 3개월~6개월 미만(48.8%) 비율이 비슷하나. 취업 여부와 체류 자격이 연동된 방문취업의 경우 3개월 미만(69.3%) 비율이 높음.

[그림 11] 실업자 구직 기간



- 구직 시 어려움은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51.7%) > 외국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15.7%) > 기타(12.5%) 등 순임.

<표 34> 구직 시 어려움 (복수응답)

		구직시 애로사항								전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한국에서의 경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본국의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기타	어려움 없었음	
방문 취업	빈도	923	1,363	3,678	146	1,018	1,085	935	792	7,248
	%	12.7%	18.8%	50.7%	2.0%	14.0%	15.0%	12.9%	10.9%	100.0%

		구직시 애로사항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한국에서의 경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본국의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기타	어려움 없었음	전체
재외 동포	빈도	406	2,565	7,232	1,022	922	2,229	1,696	1,839	13,875
	%	2.9%	18.5%	52.1%	7.4%	6.6%	16.1%	12.2%	13.3%	100.0%
전체	빈도	1,329	3,928	10,910	1,168	1,940	3,315	2,630	2,631	21,122
	%	6.3%	18.6%	51.7%	5.5%	9.2%	15.7%	12.5%	12.5%	100.0%

○ 중국 동포 10명 중 2~3명(25.1%)이 한국 외 가족·친인척에게 송금을 하고 있음(취업자: 36.4% 송금). 송금 횟수는 연 12회 이상(43.1%) > 연 3~4회(20.1%) > 연 1~2회(14.9%) 등 순임. 남성(31.6%)은 여성(17.5%)에 비해 송금 비율이 높음.

〈표 35〉 해외 송금 여부, 송금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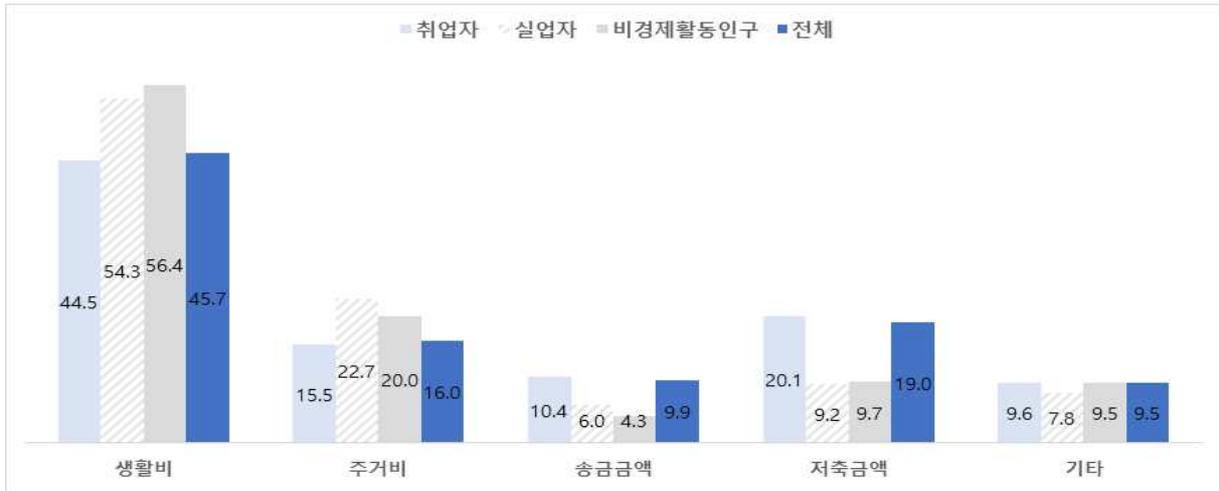
		해외 송금 여부		송금 횟수				
		송금하지 않음	송금함	연1~2회	연3~4회	연 5~6회	연 7회~연 11회	연 12회 이상
성별	남성	68.4%	31.6%	12.9%	18.3%	14.6%	9.7%	44.5%
	여성	82.5%	17.5%	19.0%	23.5%	9.3%	10.9%	37.4%
체류 자격	방문취업	63.5%	36.5%	11.6%	19.9%	12.8%	11.0%	44.7%
	재외동포	79.0%	21.0%	17.0%	20.0%	12.9%	9.5%	40.6%
종사 산업	농림어업	68.0%	32.0%	17.2%	21.5%	17.9%	9.4%	34.0%
	광제조업	58.9%	41.1%	15.2%	18.8%	9.8%	10.1%	46.1%
	건설업	58.0%	42.0%	12.6%	16.2%	14.2%	10.3%	46.8%
	도소매, 음식, 숙박	70.1%	29.9%	15.6%	23.7%	9.7%	11.7%	39.3%
	전기, 운수, 통신, 금융	78.1%	21.9%	11.2%	35.7%	24.8%	2.0%	26.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69.0%	31.0%	17.8%	24.3%	13.9%	8.1%	35.9%
전체		63.6%	25.1%	14.9%	20.1%	11.9%	10.1%	43.1%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중국 동포 평균 생활비 지출 항목은 생활비(45.7%) > 저축(19%) > 주거비(16%) > 송금(9.9%) > 기타(9.5%) 순임.

- 비경제활동인구(56.4%)와 실업자(54.3%)는 취업자(44.5%)에 비해 생활비 비율이 높고, 주거비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음. 한편, 취업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송금(10.4%)과 저축(20.1%)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12] 월 평균 지출 비율 - 경제활동 상태별 (단위: %)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 성별로 생활비 지출 현황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송금액과 저축액 비율이 높고, 여성은 주거비 비율이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월 평균 지출 비율 - 성별·체류자격별 (단위: %)



자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1)」

IV. 요약과 함의

-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 체류자격 중 다수를 차지함. 강력한 노동 이주 유인, 재외동포 제정 당시 재외동포 범위가 담지하고 있던 차별과 시정, 친인척 방문 경로 형성 등 여러 요인이 뒤섞인 결과, 중국 동포 체류자격의 제도적 분화로

이어졌음.

- 현 시점, 재외동포 자격자는 자유로운 출입국과 정주가 허용되지만, 단순노무 분야 취업은 금지됨. 방문취업 자격자는 단순노무 분야에 한정해 취업이 허용되고,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취업 절차를 밟게 되며 체류 기간의 상한이 있음. 즉, 제도적으로 중국 동포의 체류자격에 있어 단순노무 인력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이주 분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재외동포 취득 경로 중 다수가 방문취업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이며, 산업 현장에서도 단순노무직-비(非) 단순노무직 구분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원고에서는 통계청 ‘이민자 고용조사(2021)’와 부가조사 분석을 통해 방문취업과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중국 동포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분석했음. 그 주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첫째,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연령대는 50~59세(29.8%)와 60세 이상(28.4%)이 절반 이상임. 기혼 비율은 66.1%이고 비혼·미혼 비율은 33.9%이나, 내국인에 비해 이혼(31.2%)과 사별(27.2%) 비율이 높음. 특히 여성은 사별 비율(방문취업 30.1%, 재외동포 51.5%, 전체 48.5%)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둘째,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봤을 때 남성 취업자 비율은 75.5%이고, 여성 취업자 비율은 54.3%임. 다만 성별·연령별 취업자 분포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30~49세까지 남성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낮으나 50~59세(남성 32.8%, 여성 36.8%)와 60세 이상(남성 15.6%, 여성 20.6%)은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중국 동포 여성은 중고령에 접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 셋째, 방문취업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서(51.2%)가 절반 수준임. 하지만 동시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여기거나(11.3%)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없어서(10.9%) 등 상대적으로 오랜 체류 기간이 보장되고 취업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약 22.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넷째, 재외동포 한국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방문취업일 때와 현재 모두 취업함(85.5%)이 대부분임. 재외동포 대상으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일 때와 하는 일의 속성과 임금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76.6%)”, “방문취업일 때와 임금 또는 보수가 동일한 경우(73%)”가 다수임. 따라서 방문취업-재외동포의 노동은 연속성을 띠.

- 다섯째, 한국 취업 시 출입국관리소 또는 고용센터 신고 여부는 “신고”가 59.4%이고, “미신고”가 40.6%임. 또한, 현재 직장(혹은 최근 직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50.2%에 불과함.
 - 취업이나 근무처 변경 시 미신고 이유는 “취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46.9%)” > “일용직이라서(21.2%)” > “신고 방법을 몰라서(12.3%)” 등 순임. 방문취업과 달리 재외동포는 별도의 취업 절차가 없다는 점, 그리고 취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와 신고 방법을 몰라서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동 현장에서 취업 신고 등의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직경로는 “한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28.7%)”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20%)”, 혹은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지인(15.4%) 등 개인적인 인맥 비율(64.1%)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하이코리아 등 한국 정부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경유해 구직하는 경우(2.5%)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주-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직 경로 형성이 필요함.
- 일곱째, 중국 동포 중 32.2%가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30.8%)보다 여성(36.6%)이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 다수 종사 산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장시간 노동 비율이 49.6%로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월 소득구간을 살펴보면 남성(34.6%)은 여성(4.6%)에 비해 300만원 이상 비율이 30%p 높고, 여성(32.2%)은 남성(12.5%)에 비해 100만원~200만원 미만 비율이 높음. 이러한 차이는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광제조업, 건설업)과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여덟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97%) > 산재보험(58.4%) > 고용보험(51.1%) > 국민연금(47.2%) 순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당연가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재보험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음. 특히 농림어업(산재보험 미가입 65.6%)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장벽이 높은 점 등 제도적 한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 기존에 있는 사회보험 지원제도와의 연결 역시 필요함.
- 아홉째, 중국 동포 실업자 중 약 40%가 지난 1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취업자 역시 지난 1년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경우(8.9%)가 있음. 중국 동포 실업자 모두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곽재석·설동훈. 2010, 『외국국적 동포 취업실태와 취업지원 강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보고서.
- 곽재석. 2019, 「재외동포법 시행 20년의 평가」, 《이주와통합》, Vol.8, pp.40-57,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 김유휘·이정은·안수란·박고은·전지혜·손인서. 2021,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2021-39).
- 김중수. 2016, 「한국 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Vol.44, pp.191-20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김판준. 2014, 「중국 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No.32, pp.109-138, 재외한인학회.
-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한국문화인류학》, Vol.42 no.2, pp. 35-75, 한국문화인류학회.
- 박경숙·이창원·강미선. 2019, 『중국 동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2019-04).
- 박미화·김솔. 2017,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중국 동포 혐오증: 오원춘 사건 보도 전후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Vol.11 No.3, pp.92-117,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박우. 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No.91, pp. 241-268, 비판사회학회.
- 박준휘 외. 20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손인서. 2020, 「중국 동포 돌봄노동자의 경력이동: 연령화·인종화된 인식과 이주민 불평등」, 《경제와사회》, No.128, pp.312-344.
- 오정은·김경미·송석원·문민·김혜명. 2017, 『국내체류 중국 동포 현황 조사』, 2016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 이우영. 2019,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입법학연구》, Vol.16 No.1, pp.1-37, 한국입법학회.
- 이진영·이혜경·김현미. 2008,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 및 동포 만족도 조사』, 법무부 연구보고서.
- 이창원·최서리·권채리·박미화·조하영·이도은. 2021,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 통합에 대한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2021-05).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한국사회학》, Vol.40 No.5, pp.258-298, 한국사회학회.
- 최윤철. 2021,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45 No.2, pp.3-30,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리서치. 2020, 「코로나19를 통해 본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혐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조사 결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 년도.